

2025년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온라인수출 공동물류 사업) 수행기관 추가 모집공고

미(美) 관세 조치 등 국제통상환경 급변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출물류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온라인수출 공동물류 사업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2025년 5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모집개요

모집목적

- 온라인수출 중소기업에 ①국제물류비 상시할인, ②국내·외 풀필먼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분야별 전문기관을 모집

주무부처/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모집분야 및 규모

구 분	항 로			수 행 내 용
	미 국	중 국	일 본	
규 모	1~2개사	1~2개사	1~2개사	① 물류비 상시할인 ② 풀필먼트 서비스 제공

* 기존 선정된 수행기관도 지원하지 않는 항로 신청 가능

** 신규 및 기 선정 수행기관 신청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규모를 결정(1차 모집시 선정된 수행기관이 선정될 경우 계획된 모집 규모보다 추가로 선정할 수 있음)

모집기간 : 2025.05.16.(금) ~ 2025.05.23.(금) 18:00

2.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다품종·소량 수출물량 집적 기반의 물류비 절감, 배송 최적화, 풀필먼트 이용 활성화를 통해 中企 수출 경쟁력 강화

□ **사업규모** : 참여기업 1,350개사, 사업예산 12,331백만원

□ 사업내용

① (물류비 상시할인) 온라인수출 물품의 해상·항공 배송료 할인 및 목록통관의 수출신고 변환 지원

※ 수행기관에 물량처리에 따른 처리비 및 수출신고 변환비용 지급

② (풀필먼트 서비스 지원) 풀필먼트* 서비스 및 풀필먼트 유사 서비스 (창고, 물류센터, 국내·외 물류거점 등) 제공 지원(참여기업에 이용료 70% 지원)

* 수출품에 대한 국내 픽업, 보관, 입출고, 포장, 배송, 통관, 수입대행 등

□ **사업기간** : 선정일 ~ 2025년 12월말(결산 등 사후관리 기간 포함)

□ 사업 절차 및 일정



3. 신청 및 제외 대상

- **(신청대상)** 국내·외에 물류창고¹⁾를 운영하여 전자상거래 수출물품의 물류대행(3PL)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국내법인 혹은 개인사업자²⁾
 - 1) 물량집하, 국내 풀필먼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내 물류창고 최소 1개 이상 보유
 - 2) 해외배송, 국내·외 풀필먼트, Last-Mile, 통관·수출입신고대행 및 컨설팅 등을 제공 가능한 복합운송업, 국제물류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국내 물류사

□ 제외대상

- ① 휴·폐업 기업
- ② 법인 또는 대표자가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③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 ④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공공기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 동일 대표자,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경영주가 동일한 경우 등
- 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의 위반으로 인해 부정당제재정보공개 중인 경우
- 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해외사업 부정당업자로 등록 또는 통보된 기업
- ⑦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⑧ 신청제외 업종 영위기업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신청 제외

4. 수행기관 수행업무

① (물류비 상시할인) 사업 참여기업에 할인단가로 물류 제공*

* 물류비 상시할인 수혜기업은 '24년 수출실적 500만 달러 미만 기업 대상으로 연간 중진공 요율로 물류 제공(단, 물류처리비 정산시 중소기업 1개사 당 최대 1만건까지만 정산 가능)

- (수출신고 활성화) 목록통관 수출 건에 대한 간이수출신고 자동 변환시스템 이용(료) 지원 안내* 등 수출신고 활성화 역할 수행

* 목록통관 자동변환 이용료는 물량처리비에 포함하여 수행기관에 지급 예정(실비)

- (월별 처리실적 제공) 참여기업의 물량에 대한 월별 처리 건수, 중량, 배송국가, 운송장번호 및 배송비 등 처리 물량데이터 제공

② (플필먼트 서비스 지원) 참여기업에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국내·외 물류창고 및 물류 서비스 등 이용을 지원

- (사업비 정산) 물류거점·서비스 이용내역 증빙서류 제출 등 참여기업 정부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반사항 지원

- (우수사례 발굴·홍보) 첫 수출 성공,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수출국가 다변화, 수출품목 다양화(일부품목 수출현상 완화), 위기극복 등 성공·성장 스토리를 보유한 지원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 참고 >

- 참여기업과 연간 해외배송, 플필먼트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단가계약 체결(수행기관-참여기업 간 물류 이용계약서 작성)
- 공동물류사업 지원기간 종료('25년 11월말) 이후에도 '25년 12월말까지 할인혜택 유지
- 지원기간 중 운임 급등락, 물류시황 변동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단가조정 필요 시, 중진공과 사전협의 필수

5. 사업비 지급방식 및 성과목표

구 분	사업비 지급방식	성과목표
물류비 상시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행기관에 참여기업 물량 처리 건에 대한 물량처리비¹⁾와 참여기업 수출 목록통관 변환신고 비용 지급 * 참여기업별 할인적용건수 : 최대 1만건 <p>중진공→수행기관(물량처리비+목록변환실비)</p>	<p>EMS 정상단가 대비 최소 65% 이상의 물류비 할인</p>
풀필먼트 서비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기업에 전년도 수출실적에 따른 지원한도(기업당 최대 25백만원) 차등 배정 풀필먼트 이용 건에 대한 정산 신청 시 검수 후 청구분의 70% 지급 <p>(先) 참여기업(이용료 100%)→수행기관 (後) 중진공(이용료 70%)→참여기업</p>	<p>주)참여기업 수출증대 (전년대비 풀필먼트 수출액 10% 증가)</p> <p>부1)배송기간 단축, 물류비 절감 (지원기업의 사업 참여 전후 비교)</p> <p>부2)해외 물류서비스 거점 확대 (참여기업의 수출국 다변화 니즈 충족)</p>

1) 건별·중량별 물류처리 비용 산정액(중진공 산정) 및 기본단가-실배송비 간 차액 중 작은 값을 지급

6. 신청방법 및 신청서 작성방법

□ **(신청방법)** 고비즈코리아(<http://kr.gobizkorea.com>)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서(붙임1), 사업수행계획서(붙임2) 등 7.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고비즈코리아 신청페이지에 업로드

- 주요국(미·중·일) 중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국가를 택하여 신청 (최소 1개국~모두 선택 가능), 주요국(미·중·일) 외 국가는 수행기관 최종선정* 시 서비스 제공 가능

* 미·중·일 중 1개국 이상 지원

□ **(작성방법)** 아래 세부 수행내용, 사업비 지급방식 및 성과목표를 참고하여, 제안내용을 양식에 맞추어 상세히 작성*

* 국문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영문·전문용어 사용 시 주석을 활용해 상세기술

**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고의 누락한 경우에는 선정 취소 및 정부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① **(물류비 상시할인)** 해외배송 가능국가, 중량별¹⁾ 물류사 기본단가²⁾, 동 사업 참여기업에 제공가능한 최대 할인단가 동시 제시³⁾

1) Door-to-Door 기준, 해상·항공 배송료를 중점국가(미중일)와 배송가능 국가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예상 배송일수는 최소일수~최대일수로 작성(제출서류⑫)

2) 수행기관의 평균처리물량을 기준으로 신규고객에 통상적으로 제시하는 요금과 월 물량 기준(예시: 월 1천건 이하)을 함께 기재

3) 제시한 최대 할인단가는 참여기업 모집 시 공고문과 함께 고시되며, 제시된 월 물량 기준을 초과한 참여기업에게 추가 할인 적용 가능

② **(풀필먼트 서비스 지원)**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국내·외 물류창고 현황¹⁾, 물류서비스 단가²⁾, 운영계획 등 제안

1) 국가(도시), 창고사진, 제공가능서비스 및 면적 등 상세내용 작성(제출서류⑫)

2) 국내픽업, 풀필먼트(보관, 입·출고, 피킹·패킹, 라스트마일 등), 통관·수출입신고 대행비 등 지원 항목별 물류서비스 단가 제시

7.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연 번	서 류	양식·발급처 등	작성요령
①	수행기관 신청서 (붙임1)	중진공 양식 (hwp, docx)	· 고비즈코리아 모집공고 페이지 내 '제출양식' 활용하여 작성 후 첨부
②	사업수행계획서 (붙임2)		
③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붙임3-2)		
④	사업자등록증	유관기관 발급	· '25년 발급본 제출
⑤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기업만 제출('25년 발급본 제출)
⑥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법인기업-법인기준, 개인기업-대표자 기준 발급
⑦	최근 3개년('22년~'24년)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 홈택스(www.hometax.go.kr) 발급 '24년은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대체 제출 가능
⑧	평가위원회(2차평가) 발표자료	자유양식(PPT)	· 사업수행계획서와 별도
⑨	회사 소개자료		· 개요·연혁·조직도·서비스 등
⑩	기업(신용)정보제공 동의서 (붙임3-1)	온라인 동의**	· 고비즈코리아 모집공고 페이지 내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 진행, 온라인 상에서 동의(서명) 진행
⑪	청렴이행서약서 (붙임4)		
⑫	노선별 배송단가표 (국가/중량별 항공/해상 단가, 풀필먼트·목록변환 이용료)	중진공 양식 (Excel)	· 고비즈코리아 모집공고 페이지 내 '제출양식' 활용하여 작성 후 첨부
⑬	거래기업 중 국내 온라인수출 중소기업 목록 (기업명, 사업자번호)		

* 개인기업의 경우, 모든 서류 주민등록번호 비공개 후 제출

** 해당 서류의 경우 여타 서류를 구비한 뒤 온라인에서 동의(서명) 진행으로 제출

8. 평가·선정 방법

- **(선정절차)** 1차 서류심사 후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
 - **(1차: 서류평가)** 기본요건, 신청서 및 필수서류 제출여부,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검토 후 발표평가(2차) 대상자 선정
 - 주요국(미·중·일)별 별도 평가 실시
- | 지원국가 | 예시 : 전년도 물량처리실적(10점) / 평가방식 |
|-------|--|
| 미·중·일 | 전년도 전체 물량처리실적 중 '미·중·일' 각 지역 배송건수만 집계 후 평가 |
- **(2차: 발표평가)** 사업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 기반의 제안서 PT (자율양식 PPT, 분량 제한 없음) 발표
 - 8인 이상(외부 전문가 과반수)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개최
- **(선정기준)** 서류평가(적부, 정량) 및 발표평가(정성) 결과를 합산하여 평균 80점 이상 득점 업체 중 고득점 순 선별
 - **주요 평가항목** (세부사항은 17P 부문별 평가표 참조)
 - 배송단가 할인율(%), 온라인수출 중소기업 지원규모, 국내·외 물류거점 보유 현황 및 수행계획 등

9. 문의처

구분	연락처
사업 관련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선) 02-2130-1484, 1488 •(메일) ylee@kosmes.or.kr, ljs19951@kosmes.or.kr
시스템 관련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선) 1588-6234 •(메일) help@gobizkorea.or.kr

【붙임2】 사업 수행계획서 - 작성 후 온라인 첨부

※ 양식 내 항목에 맞추어 빠짐없이 작성, 미기재 시 서류평가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음

2025년 온라인수출 공동물류 사업 수행계획서 [수행기관명]

1. 수행기관 개요

회사 연혁

년 월 일	주요내용(설립, 상호·대표자변경, 법인전환, 이전, 해외조직 설립 등)

대표자 이력사항

기 간	기 업 명	주요 경력
~		
~		
~		

* 주요경력(근무처, 직책, 근무기간) 명시

경영실적 지표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매출액			
수출액			
영업이익			
부채비율			

정부기관 협업실적 (최근 3개년)

연 번	사 업 명	협업기간	계약금액 (단위: 천원)	발주기관

1) 현재 수행 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

유사사업 수행실적

연 번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단위: 천원)	발주처

- 1) 현재 수행 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
- 2) 최근 3개년 '22~'24년 진행한 수행실적 건 기재
- 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 기재

사업수행 범위

국가	국내 풀필먼트				해외 풀필먼트			
	보관	픽업 (밀크런)	입출고	신고대행 (목록변환)	배송	보관	입출고	내륙운송
미국	O/X	O/X	O/X	O/X	O/X	O/X	O/X	O/X
일본	O/X	O/X	O/X	O/X	O/X	O/X	O/X	O/X
중국	O/X	O/X	O/X	O/X	O/X	O/X	O/X	O/X

- 1) 주요 배송국(최대 3국)에 대한 풀필먼트 수행범위 작성
- 2) 자체수행의 경우에만 "O" 표기하고, 대행사 위탁수행 및 미수행 시 "X"

주요사업 영역

- 1) 제공 서비스에 대한 상세설명 기재
- 2) 주요 협력 파트너, 진출 시장(국가), 주요 고객 및 수행기관 특징점 등 기재

조직 및 인력보유현황

* 조직도 이미지 삽입 및 보유인력 기재

2. 사업 수행계획

제안개요

* 수행가능 범위, 사업진행 방향·전략 및 과업 수행계획 제시

참여기업 발굴·추천 및 사업홍보 계획

구 분	내 용
총 지원예정 기업 수(a+b)	개사 내외
추천예정 기업 수(a)	개사 내외
신규 발굴예정 기업 수(b)	개사 내외
사업홍보 계획	

* '24년 참여기업은 전년도 지원업체 수 반영

전담인력 투입계획

연 번	성 명	직 위	연 령	본 사업 수행업무	학력(전공)	경력(년)

물류비 상시할인 계획 (자체노선만 기재)

구분1	구분2	국가	2kg 이하 평균요율	비고
항공	주요 국가	<input type="checkbox"/> 미국		
		<input type="checkbox"/> 중국		
		<input type="checkbox"/> 일본		
	배송 가능국			
해상	주요 국가	<input type="checkbox"/> 미국		
		<input type="checkbox"/> 중국		
		<input type="checkbox"/> 일본		
	배송 가능국			

구분	단가(원)	유형	비고
목록통관 변환시스템		관세사, 자체시스템 활용 등	

* 국가, 중량별 세부 항공·해상 단가표는 제출서류⑫로 제출

물류거점 · 서비스 지원계획

구분1	국가	지원 서비스
국내	-	픽업(입고 대행 밀크런 등), 입·출고, 보관
해외		수출입 신고대행
		ラスト마일

* 풀필먼트 서비스에 대한 세부정보 및 세부단가는 제출서류⑫로 제출

** 자사 및 자사 해외법인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점목록만 제출 (예: 중진공JP - 도쿄)

위 사업 서비스(물류비 상시할인, 풀필먼트) 외 중소기업 물류 지원 및 해외판매 확대를 위해 제공 가능한 추가 서비스

* 풀필먼트 비용 추가할인, 밀크런(픽업), 수출국 IOR, 디지털물류, 해외판매 인증 컨설팅 등

수출신고 활성화 계획

* 목록통관 → 간이수출 변환 가능 여부, 목표 건수, 중소기업 참여 유도방안 등

글로벌 플랫폼 연계 물류 솔루션 제공

* 글로벌 플랫폼 연계 배송협력, 수입대행(IOR), 검역, 세제, 보세창고 제공 등

【붙임3-1】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온라인 서명을 통해 제출

<개정 2025. 1. 9.>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귀중

본인은 중기부·중진공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기부·중진공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 및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청렴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등)를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kr.gobizkorea.com), 중소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 및 중진공 홈페이지(http://www.kosmes.or.kr) 및 에 공개
수집·이용할 항목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재무제표 등),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목적국, HS코드, 수출액, 종량, 국가별수출액, 운송방법, 거래구분, 화주, 수리일, 품목명, 수출신고번호, 재수입여부, 선적일, 수출자, 제조자 등), 간접수출에 관한 거래내역(공급기업, 공급액, HS코드, 품목명, 문서번호, 발급일), 기타 신용정보(국세, 지방세 등 체납정보, 사회보험료 관련 정보,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등에 기재된 정보, 국제기본법 제81조의13 따른 과세정보(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고용에 관한 정보(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 수 등), 기타 지원사업 추진, 관리, 상담, 업무처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수혜기업 정보는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2. 기업(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대상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조회회사 : 한국평가데이터(주), NICE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은행연합회 등 ▶ 직간접 수출 실적 조회 관련 관계기관(관세청,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우정사업본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제공·조회 목적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지원사업 수출성과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 및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등
제공·조회할 기업(신용)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조회회사에 조회하고자 하는 귀하의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등 ·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채무, 납세실적 등), 재무현황(재무제표 등) ▶ 직간접 수출 실적 조회 관련 관계기관(관세청,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소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우정사업본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기업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등 · 기업등록관련 정보(설립, 주식 등), 정책 지원내역, 영업상황(판매실적, 주요구매처 등), 국제기본법 제 81조의13의 과세정보(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 수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목적국, HS코드, 수출액, 종량, 국가별수출액, 운송방법, 거래구분, 화주, 수리일, 품목명, 수출신고번호, 재수입여부, 선적일, 수출자, 제조자 등) · 간접수출에 관한 거래내역(공급기업, 공급액, HS코드, 품목명, 문서번호, 발급일) ▶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 등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사업완료 및 사후관리 등 신청한 계약의 목적 달성 때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중진공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3. 기업(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조회회사 : 한국평가데이터(주), NICE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은행연합회 등 ▶ 수출 실적 조회 관련 관계기관(관세청,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유동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우정사업본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제공받는 자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조회회사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무역정보통신, 한국무역협회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 중소기업유동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우정사업본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공공기관에서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등
제공할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조회회사에 제공되는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목적국, HS코드, 수출액, 중량, 국가별수출액, 운송방법, 거래구분, 화주, 수리일, 품목명, 수출신고번호, 재수입여부, 선적일, 수출자, 제조자 등)) ·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 기타 신용정보(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관리를 위한 상담, 지원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무역협회 : 직간접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목적국, HS코드, 수출액, 중량, 국가별수출액, 운송방법, 거래구분, 화주, 수리일, 품목명, 수출신고번호, 재수입여부, 선적일, 수출자, 제조자, 공급기업, 공급액, 문서번호, 발급일 등) ▶ 중소기업유동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우정사업본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식별정보, 신용능력정보(기업현황, 사업장 및 가동현황, 신용거래정보, 영업상황, 재무상황) 등 ▶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소득의 총액 등) 등
제공받는 자의 기업(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상품거래 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를 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4. 공공기관 등 보유 신용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 국가기관(중기부, 국세청, 관세청, 고용노동부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제공·조회 목적	▶ 중기부·중진공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관련 조사, 평가, 정책자료 및 사후관리에 이용
제공·조회 정보의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전화번호 등 연락처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목적국, HS코드, 수출액, 중량, 국가별수출액, 운송방법, 거래구분, 화주, 수리일, 품목명, 수출신고번호, 재수입여부, 선적일, 수출자, 제조자 등) ▶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4대보험료 등), 고용에 관한 정보(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 수 등), 정책지원내역 등
제공·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조회)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제공(조회)의 목적과 관련된 상품거래 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를 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신용정보를 중진공에 제공하여, 중기부·중진공이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권한부여에 대한 동의여부	중기부·중진공이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국가기관 등에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2025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전자서명)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 -
사업자등록번호			

- ※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사(귀하)의 신용조회사실이 귀사(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중기부·중진공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 및 서비스가 해지 등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청렴이행서약서

당사와 당사의 임직원은 부패방지 및 청렴 활동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자상거래수출 시장진출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령 및 규정 등에 정해진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공정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 사업 참여 신청, 평가, 선정 또는 협약체결 및 협약이행, 사업수행 과정에서 관련 기관 및 기업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사업추진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선정 또는 협약체결 이전에는 사업 결정(선정) 취소, 협약이행 전에는 협약취소, 선정 또는 협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선정 또는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으며, 당사는 이를 감수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기업명 ○ ○ ○
대표이사 ○ ○ ○ (인)

【참고 1】수행기관 평가표

온라인수출 공동물류 수행기관 평가표

구 분	평가 항목	평가 지표	배 점	
서류평가 (적/부)	서류 완결성	신청서 및 제반 징구서류 완비 여부	한 가지라도 부적격 시 자동 탈락	
	제외대상	신용불량기업, 국·지방세 체납여부 등		
	자격요건	국내·외 물류창고 보유여부, 3PL 가능여부 및 사업자등록증상 업종확인		
정량평가 (70)	경영평가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10	
		'24년 매출액	5	
	고객저변	물류지원 사업 지원가능 중소기업 수	10	
		'24년 참여 전년도 지원기업 수 신규 신청 기본점수 부여(8점)		
	네트워크	배송가능 국가 및 국내·외 거점 수 * 3PL 지역, 국내 1거점 반드시 포함 ** 국내 및 주요국 거점 수로만 평가	10	
	수행능력	EMS 정상가 대비 배송단가 할인율 * 2kg 이하 평균단가 기준	5	
		기본단가 대비 제시단가 할인율 * 2kg 이하 평균단가 기준	10	
	수행경험	유사용역 수행경험 * 최근 3년 이내 ('22~'24) 정부기관 등 용역수행실적 계약건수와 계약금액을 구간별 점수 부여하여 평가	10	
		'24년 참여 '24년 물류처리 실적(배송건수)	10	
		신규 신청 수행업력(10년 이상 시 만점)		
	정성평가 (30)	사업 운영 역량	신규 중소기업 발굴·추천 및 사업홍보 계획	5
			전담인력 보유 현황 및 투입 계획	5
기존 서비스 외 제공가능 추가 물류서비스			5	
지원 서비스 수행계획		수출신고 활성화 지원 * 목록변환시스템 활용계획(내재화 또는 관세법인 협력), 단가 및 변환 가능 건수 제시 등 지원 활성화 방안	5	
		글로벌 플랫폼 연계 물류 솔루션 제공 * 플랫폼 연계 배송협력, 수입대행(IOR), 보세창고 제공 등	10	
합 계			100	

【참고 2】수행기관 평가표(상세)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기준													
기본요건	서류 완결성	-	신청서 및 제반 청구서류 완비 여부													
	제외대상		신용불량기업, 국·지방세 체납여부 등													
	자격요건		국내·외 물류창고 보유여부, 3PL 가능여부 및 업종확인 등													
경영평가	신용등급	10	【평가서류】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기업신용조사기관 발급분) <table border="1"> <tr> <th>10점</th> <th>9점</th> <th>8점</th> <th>7점</th> </tr> <tr> <td>AAA~BBB0</td> <td>BBB-~BB-</td> <td>B+~B-</td> <td>CCC+ 이하</td> </tr> </table>				10점	9점	8점	7점	AAA~BBB0	BBB-~BB-	B+~B-	CCC+ 이하		
	10점	9점	8점	7점												
AAA~BBB0	BBB-~BB-	B+~B-	CCC+ 이하													
매출액	5	【평가서류】최근 3개년('22~'24) 재무제표 <table border="1"> <tr> <th>5점</th> <th>4.5점</th> <th>4점</th> <th>3.5점</th> </tr> <tr> <td>1,000억원 이상</td> <td>500억원 이상</td> <td>100억원 이상</td> <td>100억원 미만</td> </tr> </table>				5점	4.5점	4점	3.5점	1,000억원 이상	50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5점	4.5점	4점	3.5점													
1,000억원 이상	50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고객저변	10	【평가서류】사업수행계획서 <table border="1"> <tr> <th>10점</th> <th>9점</th> <th>8점</th> <th>7점</th> </tr> <tr> <td>100개사 이상</td> <td>50개사 이상</td> <td>30개사 이상, 신규</td> <td>30개사 미만</td> </tr> </table>				10점	9점	8점	7점	100개사 이상	50개사 이상	30개사 이상, 신규	30개사 미만			
10점	9점	8점	7점													
100개사 이상	50개사 이상	30개사 이상, 신규	30개사 미만													
네트워크	10	【평가서류】사업수행계획서 <table border="1"> <tr> <th>10점</th> <th>9점</th> <th>8점</th> <th>7점</th> </tr> <tr> <td>5개 이상</td> <td>3개 이상</td> <td>2개 이상</td> <td>2개 미만, 국내만</td> </tr> </table>				10점	9점	8점	7점	5개 이상	3개 이상	2개 이상	2개 미만, 국내만			
10점	9점	8점	7점													
5개 이상	3개 이상	2개 이상	2개 미만, 국내만													
수행능력	EMS 정상가 대비 제시단가 할인율	5	【평가서류】사업수행계획서 및 단가표 <table border="1"> <tr> <th>5점</th> <th>4.5점</th> <th>4점</th> <th>3.5점</th> </tr> <tr> <td>70% 이상</td> <td>65% 이상</td> <td>55% 이상</td> <td>55% 미만</td> </tr> </table>				5점	4.5점	4점	3.5점	70% 이상	65% 이상	55% 이상	55% 미만		
	5점	4.5점	4점	3.5점												
70% 이상	65% 이상	55% 이상	55% 미만													
물류사 기본가 대비 제시단가 할인율	10	【평가서류】사업수행계획서 및 단가표 <table border="1"> <tr> <th>10점</th> <th>9점</th> <th>8점</th> <th>7점</th> </tr> <tr> <td>10% 이상</td> <td>5% 이상</td> <td>3% 이상</td> <td>3% 미만</td> </tr> </table>				10점	9점	8점	7점	10% 이상	5% 이상	3% 이상	3% 미만			
10점	9점	8점	7점													
10% 이상	5% 이상	3% 이상	3% 미만													
수행경험	유사용역 수행실적	5	【평가서류】최근 3년 이내('22~'24) 정부기관 등 용역수행실적 증빙 <table border="1"> <tr> <th>구분</th> <th>5점</th> <th>4.5점</th> <th>4점</th> <th>3.5점</th> </tr> <tr> <td>계약건수</td> <td>5건 이상</td> <td>4건</td> <td>3건</td> <td>2건 이하</td> </tr> </table>				구분	5점	4.5점	4점	3.5점	계약건수	5건 이상	4건	3건	2건 이하
		구분	5점	4.5점	4점	3.5점										
계약건수	5건 이상	4건	3건	2건 이하												
5	<table border="1"> <tr> <th>구분</th> <th>5점</th> <th>4.5점</th> <th>4점</th> <th>3.5점</th> </tr> <tr> <td>계약금액</td> <td>10억 이상</td> <td>7~10억 미만</td> <td>4~7억 미만</td> <td>4억 미만</td> </tr> </table>				구분	5점	4.5점	4점	3.5점	계약금액	10억 이상	7~10억 미만	4~7억 미만	4억 미만		
구분	5점	4.5점	4점	3.5점												
계약금액	10억 이상	7~10억 미만	4~7억 미만	4억 미만												

	전년도 물류지원 실적	10	<p>【평가서류】 직전년도 지원실적 및 사업자등록증</p> <table border="1"> <thead> <tr> <th>10점</th> <th>9점</th> <th>8점</th> <th>7점</th> </tr> </thead> <tbody> <tr> <td>10만건 이상</td> <td>3만건 이상</td> <td>1만건 이상</td> <td>1만건 미만</td> </tr> </tbody> </table> <p>* 신규기업은 업력 10년 이상 시 만점, 그 외 8점 적용</p>	10점	9점	8점	7점	10만건 이상	3만건 이상	1만건 이상	1만건 미만		
10점	9점	8점	7점										
10만건 이상	3만건 이상	1만건 이상	1만건 미만										
사 업 역 량	신규 중소기업 발굴·추천 및 사업홍보 계획	5	<p>【평가서류】 사업수행계획서 및 발표자료 등</p> <p>- 추천가능 기업 수 및 홍보계획의 적정성</p> <table border="1"> <thead> <tr> <th>5점</th> <th>4.5점</th> <th>4점</th> <th>3.5점</th> <th>3점</th> </tr> </thead> <tbody> <tr> <td>매우 우수</td> <td>우수</td> <td>보통</td> <td>미흡</td> <td>매우 미흡</td> </tr> </tbody> </table>	5점	4.5점	4점	3.5점	3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5점	4.5점	4점	3.5점	3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전담인력 보유현황 및 투입 계획	5	<p>【평가서류】 사업수행계획서, 조직도 및 발표자료 등</p> <p>- 투입 인원의 적정성 및 보유 전문성</p> <table border="1"> <thead> <tr> <th>5점</th> <th>4.5점</th> <th>4점</th> <th>3.5점</th> <th>3점</th> </tr> </thead> <tbody> <tr> <td>매우 우수</td> <td>우수</td> <td>보통</td> <td>미흡</td> <td>매우 미흡</td> </tr> </tbody> </table>	5점	4.5점	4점	3.5점	3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5점	4.5점	4점	3.5점	3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제공가능 추가 물류서비스	5	<p>【평가서류】 사업수행계획서, 발표자료 등</p> <table border="1"> <thead> <tr> <th>5점</th> <th>4.5점</th> <th>4점</th> <th>3.5점</th> <th>3점</th> </tr> </thead> <tbody> <tr> <td>매우 우수</td> <td>우수</td> <td>보통</td> <td>미흡</td> <td>매우 미흡</td> </tr> </tbody> </table>	5점	4.5점	4점	3.5점	3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5점	4.5점	4점	3.5점	3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수 행 계 획	수출신고 활성화 지원	5	<p>【평가서류】 사업수행계획서, 발표자료 등</p> <p>- 목록변환시스템 활용계획(내재화 또는 관세법인 협력), 단가 및 변환 가능 건수 제시 등 지원 활성화 방안</p> <table border="1"> <thead> <tr> <th>5점</th> <th>4.5점</th> <th>4점</th> <th>3.5점</th> <th>3점</th> </tr> </thead> <tbody> <tr> <td>매우 우수</td> <td>우수</td> <td>보통</td> <td>미흡</td> <td>매우 미흡</td> </tr> </tbody> </table>	5점	4.5점	4점	3.5점	3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5점	4.5점	4점	3.5점	3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글로벌 플랫폼 연계 물류 솔루션 제공	10	<p>【평가서류】 사업수행계획서, 발표자료 등</p> <p>- 글로벌 플랫폼 연계 배송협력, 수입대행(IOR), 보세창고 제공 등</p> <table border="1"> <thead> <tr> <th>10점</th> <th>9점</th> <th>8점</th> <th>7점</th> <th>6점</th> </tr> </thead> <tbody> <tr> <td>매우 우수</td> <td>우수</td> <td>보통</td> <td>미흡</td> <td>매우 미흡</td> </tr> </tbody> </table>	10점	9점	8점	7점	6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0점	9점	8점	7점	6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합 계		100											

[참고 3] 중진공-수행기관 업무협약서

「2025년 온라인수출 공동물류」 사업수행에 관한 업무협약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수행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2025년 온라인수출 공동물류」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본 사업의 관리 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과 일반물류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수행기관명(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협약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중진공과 수행기관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의 기간 및 효력) ① 협약은 그 체결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② 협약과 관련한 민·형사상 사건이 발생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의 종료 시까지 관련사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제3조(업무의 범위)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참여 중소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 발굴 및 추천
2. 참여기업에 대한 물류비 상시할인 및 국내·외 물류거점 제공
3. 제시한 「물류비 상시할인단가(별첨1)」에 따라 참여기업 수출물품의 수출지역별 공동운송 (단, 부득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진공과 사전협의하여 변동된 단가로 운영할 수 있다.)
4. 제시한 「국내·외 거점 활용단가(별첨2)」에 따라 참여기업 수출물품의 국내픽업, 배송, 국내·외 창고보관, 픽·패킹, 통관·수출입신고대행 등 풀필먼트 서비스 지원
5. 참여기업의 목록통관신고 건에 대한 간이수출신고로의 변환서비스 지원
6. 참여기업에 대한 성과 모니터링 및 월간·최종 물량데이터 실적 보고
7. 참여기업의 풀필먼트 이용에 대한 정부지원금 정산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8. 기타 중진공이 요청하는 본 사업 관련 업무

제4조(참여기업에 대한 지원기간) 수행기관의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단, 물류비 상시할인 단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간·고정단가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개별계약 및 사전 컨설팅) ① 수행기관은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물류서비스 지원에 대한 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며, 계약 체결 시 참여기업별 맞춤형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모집공고 마감일 이후 5영업일 내에 중진공에 최종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진공은 개별계약 내용이 법률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내용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개별계약 기간은 제4조를 준용하되, 수행기관과 참여기업이 상호 협의 하에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성실수행 의무)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협약 및 개별계약에 따라 참여기업이 희망하는 물류 서비스 제공
2. 사업수행결과물 및 정부지원금 정산에 필요한 서류의 기한 내 제출
3. 중진공과 참여기업이 물류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정보의 제공

제7조(정부지원금 정산 및 지급) ① 중진공은 참여기업이 이용한 물류서비스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며, 부가세 등 지원불가 비용은 전액 참여기업이 부담한다. (단,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

1. 물류비 상시할인 서비스 이용기업의 수출물량에 대한 Handling 비용 및 목록변환 시스템에 대한 이용비용은 수행기관의 월별 처리물량 등을 바탕으로 중진공이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중진공이 수행기관에 지급한다.
2. 국내·외 거점 활용기업의 창고 보관비용 등 풀필먼트 서비스 이용비용은 참여기업당 최대 25백만원 한도 내에서 실소요 비용의 70%, 통관·수출입신고대행비는 실소요 비용의 100%를 중진공이 참여기업에 지급한다.

② 참여기업이 수행기관을 통해 이용한 물류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하여 정산·지급한다.

1. 중진공은 수행기관으로부터 참여기업의 물류 서비스 이용내역을 제출받아 항목별 지원 비율에 따라 정산·지급한다.
2. 물류 서비스별 단가가 해외 현지화폐로 책정된 경우, 중진공과 수행기관이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적용한다.

③ 수행기관은 월별 서비스 내역(배송건수, 풀필먼트 입·출고건수, 발생비용 등)을 다음 달 7영업일 내에 중진공에 제출하여야 하며, 비용정산은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기업부담금) 제5조의 개별계약에 따른 물류 서비스 중 제7조제2호에 따라 발생하는 기업부담금 및 부가세는 수행기관이 참여기업에 직접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으로 하고, 수행기관은 기업부담금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 운영하여

야 한다.

1. 기업부담금을 변칙적으로 운영하거나 이면 계약을 체결하는 등 개별계약 금액을 고의로 전용하는 경우, 중진공은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부당하게 지급된 정부 지원금은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2. 위 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중진공은 국내 언론 및 각종 인터넷 매체에 수행기관의 불성실 사항을 공개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수행기관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9조(책임 및 보고) ① 수행기관은 물류 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국내외 거점을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국내외 거점과 참여기업 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행기관에게 있다.

② 수행기관은 참여기업의 물류 서비스 추진현황 보고 이외에도 중진공이 요구하는 경우 업무수행 현황 및 실적에 대해 요구기일 내에 성실히 제출하여야 하며, 중진공의 사업현장 확인, 해외 현지거점의 업무지원 요청 등에도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중진공은 수행기관이 제출한 참여기업 지원결과를 향후 정부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변경) ① 수행기관은 사업수행기간 종료 전까지 협약의 변경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중진공이 그 변경을 승인한 날로부터 협약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지체 없이 중진공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대표자
3. 법인명 또는 상호

③ 제2항에 관한 사항의 미신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행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④ 협약의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진공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해약) ① 중진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행기관에 서면으로 협약의 해약을 통보할 수 있다.

1.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 또는 교부 목적 외 사용 등 협약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수행이 지연되거나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수행기관이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4. 수행기관이 휴·폐업,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참여가 불가능하거나 임의로 포기한 경우
5.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중진공으로부터 다른 사업에 참여하여 참여제한 조치를 받

- 고 신청 마감일 전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경과된 않은 경우
6. 사업의 신청, 평가 등의 과정에서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수행계획서 등 제출 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7. 수행기관이 협약 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8. 그 밖에 수행기관이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특별점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중진공은 수행기관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정부 지원금의 환수(이미 승인된 정부지원금의 지급금지도 포함),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민·형사상 법적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제12조(협약의 해석) 협약의 해석에 이의가 있거나 협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 중진공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사업 운영지침”을 따르고, 운영지침의 해석에 논란이 있는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하며,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2025년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사업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3조(관할법원) 협약의 관할은 중진공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2025년 0월 0일

이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중진공과 수행기관은 이 약정서를 2부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중진공)	주 소: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30(충무공동)
	상 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자번호: 116-82-01561
	이 사 장: 강 석 진 (인)

(수행기관)	주 소:
	상 호:
	사업자번호:
	대표 (이사): (인)

「2025년 온라인수출 공동물류」수행기관 E S G 경영 실천서약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본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2025년 온라인수출 공동물류」사업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가치매개고객으로 참여함에 있어 ESG경영을 적극 실천하고자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의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ESG경영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하나, 환경(Environment)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물류운송 최적화를 통한 에너지 낭비 최소화, 친환경 물류 인프라 전환 등 녹색물류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사회(Social) 부문에서는 공급망, 중소기업, 임직원, 지역사회 등에 노동조건 개선, 인권경영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공동체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지배구조(Governance) 측면에서는 투명한 이사회 개최, 소액주주 존중, 고객을 대신한 신중한 의결권 행사 등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건전한 거버넌스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하나, 직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활용하는 등 법률과 사회적 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5. 0. 0.

서약자 (주) ○○○○○○ 대표 ○○○ (인)